

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773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1. 28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11. 30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12. 17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사유

- 자연재해대책법과 부합되지 않은 일부조항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 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재해대책본부의 운영(안 제2조)
나.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(안 제3조)
다. 재해기간 파견근무(안 제5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· 시행해 오던 우리군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부합되지 않는 부분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
-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재해대책본부 구성에 있어 방재 책임자가 되는 기관 · 단체를 확대 지정하여 상위법령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제3조 재해대책 본부 회의의 구성에 있어 현행과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없는데 개정을 해야 하느냐?
- 답 :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을 명문화 하였음.
- 문 : 제5조 재해기간 파견근무에 있어 재해기간(6.15~10.15)을 꼭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?
- 답 : 재해대책 기간 동안에는 재해대책 상황근무를 함으로, 그리고 그 기간에 자연재해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판단하고 있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2. 12.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